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 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491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6. 21. 시행)됨에 따라,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치유농업 시설의 시설·장비 기준, 인력 기준 및 운영 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, 농촌진흥청장은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원, 2차 위반 시 6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,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 1차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29. ~ 2024.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1건(치유농업서비스 품질 향상)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”을 “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

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1항부터 제6항까지”를 “제1항부터 제7항까지”로 한다.

- ⑦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농촌진흥원에 내야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)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 제16조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,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(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)

제13조 중 “법 제18조”를 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 제1호라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18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8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20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8조제1항제2호”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20조 제2항	30	60	100
---	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3의2]

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(제10조의2제1항 관련)

1. 시설·장비 기준

가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 공간과 8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공간을 확보할 것. 이 경우 실외 공간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공간과 농축산물 생산 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(농축산물 생산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.

나. 세면대, 음수대 및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갖출 것

다. 소화기·구급약품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갑·모자 등의 비품을 갖출 것

2. 인력 기준

가. 치유농업시설의 대표자 1명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

나. 치유농업시설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1) 치유농업사

2)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
3)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시행하는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

4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을 1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

다.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또는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이용자의 권리 및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하였을 것

라.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또는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이용자의 권리 및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하였을 것

3. 운영 기준

가.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

- 1) 운영 방침
- 2) 중장기 목표
- 3)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·관리에 관한 사항
- 4) 치유농업자원(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을 말한다)에 관한 사항
- 5)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에 관한 사항

나.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작성·관리하고 있을 것

다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

라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내용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·보관할 것

마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이 관리되고 있을 것

바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갖출 것

사.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갖출 것

아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

자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

비고

1.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.
2.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) ① (생략)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. 1. (생략) 2. 제2차시험: <u>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</u> ③ (생략)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 다만,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. ⑤ ·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</u> <u>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</u> <u>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</u> <u>응시수수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</u> <u>원에 내야 한다.</u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·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-----

-----.

제10조의2(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)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법 제18조제1항-----

-----.

② ----- 법 제18조제

<u>2항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18조</u>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.	<u>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 농업시설의 인증,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(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)</u> 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20조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	
연 락 처	(063) 238 - 1022